

● 제32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3. 7.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I. 결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김영옥 의원 1인발의(11명 찬성)

나. 제안일 : 2024. 02. 05.

다. 회부일 : 2024. 02. 07.

라. 의안번호 : 158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과거 일탈성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에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게 침투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20대 저연령층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 마약류 정책은 시민건강국이 총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자치구,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여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내용 및 대상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등이 분산 시행하고 있어 종합적인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이송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서울특별시 마약류 관련 대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지원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마약 없는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특별위원회<sup>1)</sup> 구성을 제안함.

###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최근 서울시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마약류 범죄율이 증가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음.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검거되지 않은 전체 서울시에는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sup>3)</sup>

<표-1> 【 최근 3년간('20~'22) 마약사범(유통+투약) 검거 현황(※ 출처 : 대검찰청) 】<sup>2)</sup> (단위 :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 계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합 계	18,050	4,015	16,153	4,044	18,395	4,640	52,599	12,699
대 마	3,213	1,148	3,777	1,450	3,809	1,450	10,799	4,048
마 약	2,198	121	1,745	128	2,551	233	6,494	482
향 정	12,640	2,746	10,631	2,466	12,035	2,957	35,306	8,169

※ 전국 대비 서울시 마약사범 비율 : '20년 22.2% → '21년 25.0% → '22년 25.2%

※ (마약) 아편계, 코카인계 물질 / (향정) 필로폰·합성대마 등 각성제, 환각제, 마취제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2) 서울특별시,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보건의료정책과, (2023.5.4.) 참조.  
 3) 최신 지역별 단속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서울지역의 단속인원은 6,271명으로 12월 전체 인원의 22.7%를 차지함(인천·경기 30.7%, 부산 7.1% 등). 대검찰청, “2023 마약류 월간동향 11월호”, (2023년 12월).

- 특히 10~20대 저연령층이 인터넷 SNS를 통해 접하거나,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범죄가 증가며 학생 및 위기청소년 등이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표-2> <10~20대 마약사범 변화(출처:법무부)>4)

(단위 : 명)

구분	2017	2021	2022(1~11.)
마약사범(명)	13,906	16,153	17,073
10대 마약사범(명)	119	450	454
20대 마약사범(명)	2,112	5,077	5,335

\* '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마약류 섭취

<표-3>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 마약범죄 변화(출처:법무부)>5)

(단위 : 명)

구분	2017	2021	2022(1~11.)
사립교원(교수)*	9	13	13
의료종사자	42	156	155
운송업	116	75	80

\* 공립교원 미포함

<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마약류 유통 범죄로 처벌된 사례('22. 10.) >

- '21. 12. ~ '22. 4.경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를 매수, 판매, 흡입, 소지한 기간제 중등교사에게 징역 10월, 집유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선고

4)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 (2023. 1.29.).

5)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 (2023. 1.29.).

-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범 정부적 차원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sup>6)</sup> 총력 대응 중이며 2024년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2.5배 확대한 600억원 규모로 편성 하였음.
- 정부의 종합대책에서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범부처 기획·합동점검(검·경, 복지, 지자체 등)을 진행하고,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 까지 확대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 사항도 다루고 있음.
- 현재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은 직접 마약사범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외에, 마약 범죄가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식품위생법」상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단속노력과 함께 영업주 및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적극 신고가 시급한 상황임.
- 서울시는 이러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발맞추어 지난 2023년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

---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마약 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2023.11.22.).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의 3대 주요분야에 9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음(※ 9개 추진과제 ①여행자 일제검사 재개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②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불법 집중단속, ③불법 마약거래·유통 추적망 강화, ④처방제도 개선 등 환자보호 예방관리, ⑤범부처 합동점검 등 사후감시·단속·처벌 강화, ⑥의료용 마약류 거버넌스 구축, ⑦권역별 치료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 등 치료 활성화, ⑧전국 중독재활센터 확대 설치 등 재활 기능 강화, ⑨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기존 서울시 마약류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정부 대응의 한계와 서울시 대응의 한계로 구분하고 있음.
  - 이 중, 서울시 대응의 한계점으로 ▲교육청의 초·중·고교생 대상 학교기반 의무교육만으로는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 인식에 역부족인 점, ▲마약류 정책 초점이 강력한 단속·처벌에 맞추어져 있으나 실제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점, ▲실질적인 마약 중독 치료시설이 전국 2개소 뿐으로 서울시 내 재활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점을 꼽았음.
-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따르면서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강화하여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것에 집중, 나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 마약류 중독자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확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통한 재활 제공(주거형 재활 인프라 구축 포함),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홍보 확대, 언론매체와 연계한 콘텐츠 제작 등
  - (마약류 단속 강화) CCTV를 활용한 마약 유입 24시간 모니터링,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대상 마약류 정기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점검 강화, 마약류 검사키트 활용, 유흥시설 합동점검 실시 등

※ 참고적으로, 2024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의 마약 관련 예산 확보 내역으로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35억 3,540만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자체) 5억 1,000만원(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국비매칭) 2억 6,000만원 등임.

- 이러한 종합적인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시민건강국 내 보건의료정책과에 마약대응팀을 신설하여 전담 팀을 신설하였으며, 「시민건강국 마약대응 TF」를 통해 서울시 내·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약류 예방 등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서울시 실·국별 마약류 관련 사업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구성 목적과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서울시 실·국별 마약류 관련 사업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서울시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각 실·국별 유기적인 협력으로 서울시 전체의 마약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마약류 대응을 총괄하는 시민건강국<sup>7)</sup>(보건복지위원회), 청년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홍보 등은 미래청년기획단 및 평생교육국<sup>8)</sup>(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유흥시설 합동 단속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민생사법경찰단<sup>9)</sup>(행정자치위원회), 학생 대상 교육 홍보 등은 교육청(교육위원회) 등 다수의 소관 부서의 업무 연계가 필요하며,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sup>10)</sup>에 부합함.

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4 및 제17조

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3 및 제3절 이하.

1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실·국별 마약류 관련 정책 업무협약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위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과의 연계 필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교육·홍보를 위해서는 미래청년 기획단과의 연계 필요함. ▲청소년 대상 교육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국과의 연계 필요, ▲CCTV감시, 이상행동자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는 디지털정책관과의 연계 필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위해서는 홍보기획관과의 연계가 필요함.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11)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민건강국을 소관실·국으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대해 동의하였고, 자치경찰위원회 및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사전협의에 대해서 동의함.

1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4>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안)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명칭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 대표발의자 : 김영옥 의원

□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O/X)	업무지원 (O/X)	확인서명 (상임위원장)
시민건강국	보건복지위원회	○	○	
자치경찰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자치위원회	○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위원회	○	×	이승미

2024 년 2 월 5 일

서울특별시의회

담당 연락처

02-2180-7689